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3)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4)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○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 조례상의 정의를 규정함.

나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)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○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시행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라)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○ 2017년 8월 제작되어 금천구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#### 3)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금천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·관리함으로써, 주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 등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